

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(1차)

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'세무·회계', '기술보호' 지원을 위한 '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'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5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

모집 개요

- 사 업 명** :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
- 사업목적** :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'세무·회계', '기술보호'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
- 신청대상** :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, 창업 3년 이내 기업
 - * 세부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은 3page 참조
 - *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,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
- 지원규모** : 5,600개社 내외, 연간 최대 100만원, 2년간 지원
< 지원규모 >

주관기관 구분	선정규모	비고
한국세무사회	2,800개社	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,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
한국공인회계사회	2,800개社	

* '19년 선정시 '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,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지원부문** : 세무·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

2

지원 내용

□ **지원내용** : 협약기간 동안 '세무·회계', '기술보호' 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바우처(사업비)를 지원

○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·사용

< 바우처(사업비) 활용 가능 내역 >

지원부문	지원내용	지원한도
세무·회계	• 기장대행수수료, 법인·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* 컨설팅,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* '간편장부', '단순·기준 경비율'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• 세무·회계 프로그램 구입비	연간 최대 100만원 *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
기술보호 (임치)	•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*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(신규 20만원, 갱신 10만원) *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	현금부담금 별도

- * 세무·회계 사무소의 경우, 세무·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
- * 협약기간 중 '휴·폐업', '대표자 변경', '신청 제외 대상' 등에 해당될 경우, 사유 발생일 이후 사업 중단 및 잔액 환수
- *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불가

□ **협약기간** : '19.4.1 ~ '20.3.31

□ **사업비 지원** : 공급가액¹⁾의 70%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

* 공급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

※ **사업비 집행(예시)**

합계금액 (세금계산서)	공급가액 ¹⁾		부가세
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현금부담금	
110,000	70,000(70% 이하)	30,000(30% 이상)	10,000(10%)
	☞ 정부 지원	☞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	

☞ 창업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(세금계산서)를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7만원(공급가액의 70%)은 정부가 지원하고, 4만원(공급가액의 30%+부가세)은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

3

자격요건 및 제외 대상

□ 아래의 '자격요건'을 모두 충족하고, '신청 제외 대상'이 아닌 자(기업)

○ (자격요건)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
- ☞ **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**(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)
- ☞ **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**(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)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(www.law.go.kr에서 확인)
 - * 창업일은 **개인사업자**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, **법인**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
 - *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,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*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- ☞ **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**(2018년 1월 1일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)

○ (신청 제외 대상)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

- ☞ **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**
 - * 단,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.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- ☞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**
 - 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.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- ☞ **중소벤처기업부(舊 중소기업청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(기업)**
- ☞ **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**
- ☞ **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** * 지원제외 대상 업종 [참고1] 확인
- ☞ **'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(기업)**
 - * 협약체결 이후 중단(중단처분.중도포기자)자 포함
 - * 단, '18년 선정된 기업의 2년차 지원은 '19.6월 이후 재안내 예정
- ☞ **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(기업)**

4

사업 신청 · 선정

□ 신청기간 : 2019. 3. 4. (월) ~ 2019. 3. 28. (목)

< 신청 유의 사항 >

- ① '제출완료'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, 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선정 예정
-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
- ③ 접수마감 후,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
-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,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 :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

○ 1개 주관기관*을 선택하여 신청(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)

- *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(서류)검토, 사업비 관리 및 승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
- * 기존 세무대리 계약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- ① K-startup 접속 →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(기업 및 대표자 등록) → ③ 사업신청(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) 메뉴 클릭 →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, 사업신청 → ⑤ 기본정보 입력(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) → ⑥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20MB 유의) → ⑦ 제출('마이페이지'에서 신청 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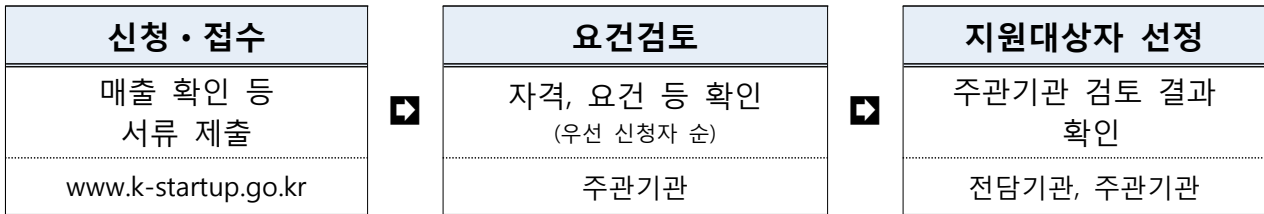
□ 제출서류 : 신청 시, 시스템 등록 서류

구분	제출서류	매출 증빙 서류(예시_택1)
1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
2	국세청(홈텍스) 발급 매출 증빙 서류 * '18년 이후 발생한 매출에 한함	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원)
3	법인등기부등본 (법인기업에 한함)	매출 전자(세금)계산서 목록표 또는 합계표
		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(전체화면)
		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
		기타 국세청(홈텍스) 발급 서류

* 서류 미제출 및 식별 불가 시,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

□ 지원 대상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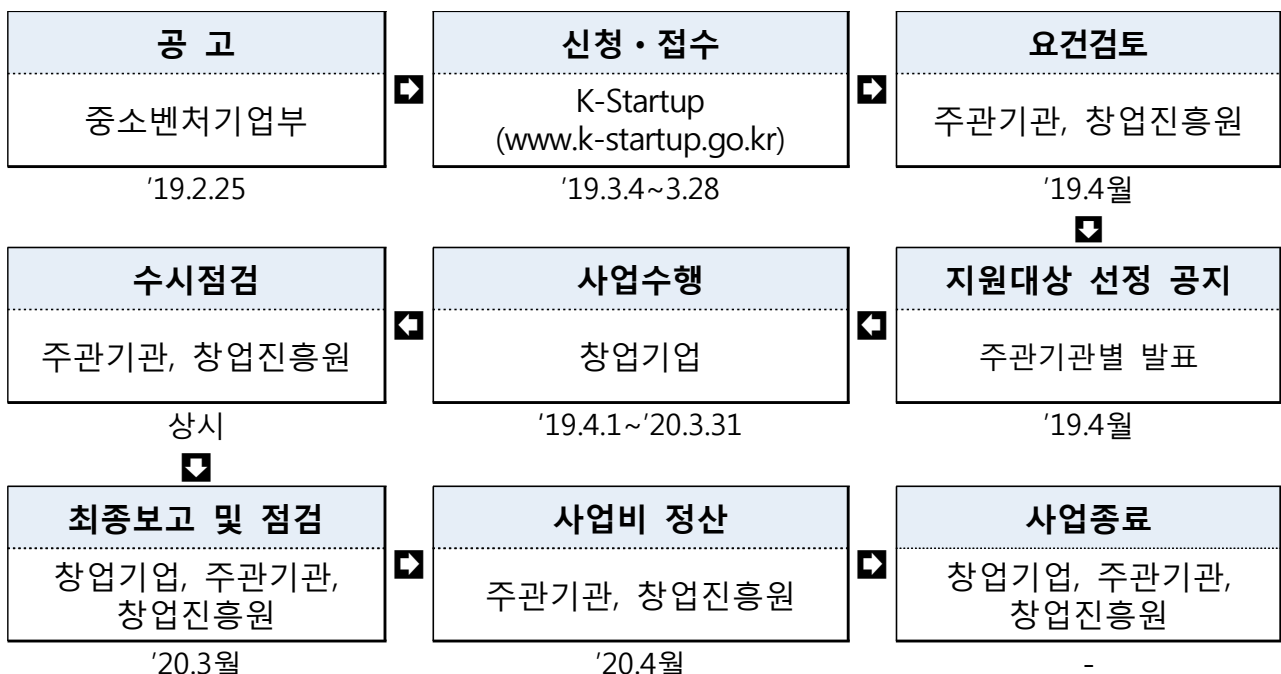
<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>



- 신청·접수 :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K-Startup ‘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,
 - 매출 확인 서류 등은 신청당시 제출하여야 함(별도 제출 불가)
- 요건검토 :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
- 지원대상자 선정 :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, 지원 대상자를 선정

5

추진 절차 및 일정



*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수행(바우처 활용)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지원이 확정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바우처(사업비)를 집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,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
 - 협약종료 후 지원받은 기업의 '19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
 - 선정이 취소되고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예외 적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업 신청당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7

사업 신청 문의

문의처		전화
사업 주관기관	한국세무사회	02-6011-8650
	한국공인회계사회	02-3149-0387, 0388
k-스타트업(시스템) 이용문의		국번 없이 1357

* 기술보호(기술자료 임치제도) 관련 세부 내용은 [참고2] 참조

참고1**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 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)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 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	961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□ **기술자료 임치제도란**

-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
 -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
 - 수·위탁거래시 사용기업의 기술탈취·유용 방지
 - 특허출원중인 기술, 공개를 우려해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 등에 대한 보호
- * (예시) 코카콜라는 125년 동안 원액의 배합비율, 레시피 등이 담긴 문서 1장을 영업비밀로 보관하여 세계적인 음료로 자리잡고 있음

□ **임치대상**

-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, 제조·생산·판매방법 등 기술·경영상 정보

기술상 정보	경영상 정보
- 생산·제조방법 - 시설·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- 물질 배합 비율·성분표 -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- SW 소스코드·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	-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) -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)

□ **이용방법 및 문의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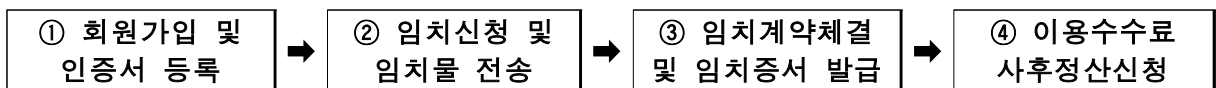
- **(이용방법)**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·선정* → 기술임치기관** (택 1)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

*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미선정될 경우 이용수수료는 본인 부담

**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(기술자료임치센터), 기술보증기금(Tech Safe)

- 이용수수료*(년/건, VAT별도) : [신규] 200,000원, [갱신] 100,000원

* 선정기업에 한하여 감면수수료 적용, (일반기업) 신규 300,000원, 갱신 150,000원



- **(문의처)** 기술임치기관별 신청페이지 및 문의처

- 기술자료임치센터 : <https://www.kescrow.or.kr>, ☎ 02-368-8762

- Tech Safe : <https://ts.kibo.or.kr>, ☎ 1544-1120